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법 제10조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외에 고액현금거래정보 또는 외국환거래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 1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이 헌 재

◎法律 第7337號

信託業法中改正法律

信託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전신탁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하 “종합재산 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이 포함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250억원 이상
2.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이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제3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세부요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인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상황 등 경영상태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체제 등 그 업무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2제4호 및 제6호중 “이 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 令”을 각각 “이 법 또는 外國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金融관련법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탁회사는 다음 각호외의 재산의 신탁을 인수할 수 없다.

7.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信託의 引受”를 “신탁 및 종합재산신탁의 인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탁회사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재산중 2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신탁의 인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신탁회사는 수탁한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①신탁회사는 신탁부문과 고유부
문간 또는 신탁상품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1.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 조직의 분리 및 임·직원의 겸직 제한
2.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 또는 신탁상품간 정보교류의 제한
3.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이해상충방지체계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합리적 이행기간을 적시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시정요구를 받은 신탁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9. 그 밖에 신탁업과 관련이 있고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고유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대출

10.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채·공채·사채·주식 등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응모·인수·매입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신탁회사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
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자본금의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5호중 “第10條第2項”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8제5항중 “大規模企業集團”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내부통제기준) 신탁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
전하게 하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
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호의3중 “許可內容 또는 許可條件”을 “인가내용 또는 인
가조건”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第27條 또는 第28條”를 “제28조”로
한다.

제29조의3중 “第15條 및 第21條”를 “제15조, 제21조 및 제24조의4”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중 “設置하고자”를 “설치하거나 폐쇄하고자”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본문중 “본다”를 “보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신탁회사의 임원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4(신탁계약에 포함될 사항) 신탁회사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
탁계약에는 수익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의5(신탁계약의 인계명령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 또는 수익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신탁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탁계약의 위탁자, 수익자 및 인계받을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인계받을 신탁회사에 인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인계받을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그 신탁회사에게 그 신탁계약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회사는 그 범위 안에서 인가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탁업법 개정이유

개인의 종합재산관리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신탁의 필요성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신탁의 수익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신탁제도의 도입(법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제1항제7호 신설)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중 2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인수할 수 있는 재산에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추가함.

나. 토지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법 제10조제4항 신설).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개발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의 개발사업별로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내부통제기준 마련(법 제24조의4 신설)

신탁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1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헌 재
장 관

◎法律 第7338號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274호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제1항중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를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하여 5년 이내에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처분기한 만료일 이전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